

☎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 /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팀원 박주영(6542)/E-mail:juuuuuuuuuu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12549호

시행일자 2025. 2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(제13-2판) 개정 안내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-252(2025.2.18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(제13-2판)」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해당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공지·뉴스 →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)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(알림·자료 → 법령·지침·서식 → 코로나19 지침)에서 확인 가능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1) 팍스로비드,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
- 2)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
- 3)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

나. 시행일자 : 2025.2.17.

※ 붙임

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2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-2판(PDF) 1부.
3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.
4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